

시멘트·건설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본격 시행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26.9%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되었으며, 새로 도입된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이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을 수립하며, 에너지소비증명제 등과 연계하여 녹색건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 대상 확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자재 개발 등을 위한 R&D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률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지난 2월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00m^2$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하였다. 이밖에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되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 1일부터 1.95%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 및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